

▶ 중국의 상표법

I. 중국의 유명상표 보호

중국의 상표 보호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정한 행정절차 또는 사법절차를 통해 인정된 유명(馳名)상표에 대해서는 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보호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유명상표 보호에 대한 논의는 1986년에 중국이 ‘파리 협약’에 가입한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1993년 개정된 상표법에 이를 반영하여 기만수단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96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유명상표 인정과 관리의 잠정 규정’을 공포하여, 유명상표의 인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2001년 개정 상표법은 미등록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규정을 처음으로 신설하였고, 2003년 4월 17일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종전의 ‘유명상표 인정과 관리의 잠정 규정’을 폐지하고 ‘유명상표 인정과 보호규정’을 공포하여, 유명상표 보호에 대한 제도를 완비하였다.

II. 상표권의 보호 방법

이의신청의 기회를 놓쳐 모방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면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이의신청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상표법 제41조 제2항).

취소청구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표평심위원회에 하면 되는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상표가 유명상표일 경우에는 5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위 이의신청 이유 외에 “해당 상표등록이 기만적인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되었음”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41조 제1항). 부정한 목적의 상표등록에 대한 취소 청구 역시 상표평심위원회에 하며, 5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셋째, 상표의 미사용이나 상표의 변형 사용 등을 이유로 하여 취소를 청구할 때(상표법 제44조).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게 되면 상표국이 제재를 가한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이러한 잘못된 사용을 상표국에 설명함으로써 상표국으로 하여금 등록 상표의 취소 절차를 시작하게 할 수 있다. 취

소의 신청은 심판 절차는 아니며 상표국이 고유 재량으로 행하는 행정처벌 절차이다. 따라서 상표국이 상표를 취소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불복할 수는 없다.

만약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북경 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한번의 상소가 가능하다.

III. 상표권 침해와 구제

1. 상표권의 침해 유형

<상표일반위법행위>

등록상표의 사용관리	- 등록상표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임의로 변형하는 행위 - 상표권자의 명의, 주소, 기타 - 등록사항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 - 상표권을 임의로 양도하는 행위 -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는 행위 - 상품을 조잡하게 만든 뒤 좋은 품질인 양 위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미등록상표의 사용관리	- 등록상표인 것처럼 허위표시하는 행위 - 상품을 조잡하게 만든 뒤 좋은 품질인 양 위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 상표를 등록한 뒤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 표지를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상표 사용허락계약의 관리	- 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품에 사용권자의 명칭과 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사용권을 상표국에 등기하지 않는 행위 - 상표 표지의 불법 인쇄 또는 구매행위

<상표침해도용사건>

상표 도용	-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또는 위조,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임을 명백히 알고 판매하는 행위
상표 침해	-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p>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았어야 하거나 명백히 알고도 판매하는 행위- 동종,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문자, 도형을 상품의 명칭이나 상품의 장식으로 사용하여 모인을 일으킬 염려가 큰 행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위하여 고의로 창고저장, 운송, 우편발송, 은닉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
--	---